

## 저가하도급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대한설비건설협회 박종학 회장, 청와대 <건설산업 상생협력 혁신 보고회>에서 대통령에게 건의

**대**한설비건설협회 박종학 회장은 지난 3월 22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혁신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 강석대 서울시회장과 함께 설비건설업계 대표로 참석하여, 「건설업계의 원·하도급자간의 상생을 위하여 저가하도급과 불공정하도급거래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강석대 서울시회장은 「설비건설업계의 평균 이익률이 2% 내외로서, 현재의 여건으로는 보험에 미가입하여 법을 위반하거나 또는 보험에 가입하고 경영위기를 맞던지 양자기로에 있다」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납부관련 제도의 개선을 건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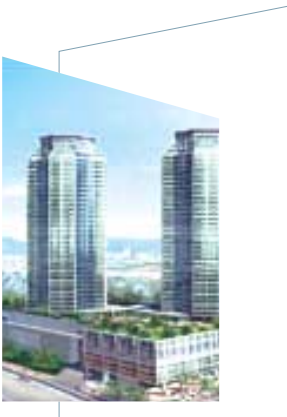
그 동안 건설산업은 경제성장이나 국민편익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의 낙후성과 경영상 투명성·윤리성 문제 등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산업 상생협력 혁신보고회>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대·중소업체간 상생협력을 전제로 건설산업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상생기반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하도급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발주자는 원·하도급업체를 수평적으로 관리하고 업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혁신방안>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지 않으면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건설교통부는 원도급자와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자가 공동으로 응찰하게 하고, 입찰시에 일반건설업자도 동시에 심사하는 파트너링 공사방식(주계약자형





△ 지난 3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건설산업 상생협력 혁신보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박종학 회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공동도급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공사와 정상 하도급 관련사항들을 상세히 입력하여 발주자가 상시 체크하는 하도급공사정보망을 구축해 하도급질서를 투명화 하겠다고 보고했다.

건설교통부는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참여하는 <건설공사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18개 공공공사에 다음 4월부터 시범 운영하겠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상생협의체가 구성되는 공사는 상호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은 물론 하도급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자금과 기술지원을 보다 확대하게 된다.

이밖에 건설교통부는 모든 공사낙찰업체를 대상으로 폐이퍼컴퍼니 여부를 심사해 업체를 퇴출시킬 계획이다.

한편 이날 <상생협력 혁신보고회>에는 설비건설업체 대

표로 참석한 대한설비건설협회 박종학 회장과 강석대 서울시회장을 비롯하여 건설교통부 추병직 장관 등 관계부처장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정부투자기관 사장, 일반건설업계 대표, 전문건설업계 대표, 연구기관 대표 등 총 36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한설비건설협회 박종학 회장과 강석대 서울시회장이 건의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저가하도급방지 및 불공정하도급 거래근절 건의**

금년도는 민간건설시장 위축과 공공공사 물량 축소, 그리고 최저가낙찰공사 확대로 건설시장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수주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려운 건설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건설업체는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가장 손쉬운 방법인 하도급 가격을 더욱 인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하도급업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하도급가격의 하락과 불공정 하도급거래이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하여 건설산업 기본법을 개정하고 공공발주공사에 대한 저가하도급을 발주자가 심사토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원도급자가 저가하도급을 강요하고 있으며, 민간발주공사는 저가하도급을 방지하는 제도적인 장치마저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하도급계약시 특약조항으로 「물가인상 및 추가공사 시 공사비 증액은 없고, 민원발생시에도 하도급자 부담으로 해결」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강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건설교통부에서는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미흡해서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불공정하도급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계의 원·하도급자간의 상생을 위하여 저가하도급과 불공정하도급거래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저가하도급심사기준을 개정하여야 하고, 민간발주공사에 대해서도 저가하도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회사가 저가하도급심사를 할 경우에 공공공사 입찰시 우대하고 정부 포상을 수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저가하도급을 강요하는 건설업체도 문제지만, 저가로 공사를 수주하는 하도급업체도 부실공사를 하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저가하도급에 대하여는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간주하여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양쪽 다 처벌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변경 인상분 미반영, 민원발생비용을 하도급자에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그 실효성이 없으므로, 처벌조항을 강화하여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쌍방이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서에

는 서명을 할 수 없도록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원도급자도 적정공사비로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제도 개선 건의

참여정부에서는 저소득층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보험 적용을 위하여 지난 2003년 7월부터 일용근로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건설교통부는 금년 1월부터 공사원가에 보험료를 포함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고시하였다.

현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인건비의 약 7%이며, 근로자가 보험료 부담을 거부할 경우 그 비용은 2배로 증가하게 된다.

공공공사의 경우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비용으로는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체물량의 70%를 차지하는 민간공사의 경우 그 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설비건설업계의 평균 이익률이 2% 내외로서, 현재의 여건으로는 보험에 미가입하여 법을 위반하던지, 아니면 보험에 가입하고 경영위기가 발생하던지의 양자 기로에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납부관련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첫 번째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법정경비로서 실제 납부한 만큼 정산할 수 있도록 준공시 사후정산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민간발주공사의 경우 도급계약내역서에 보험료를 명시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 등 처벌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

세 번째로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요율이 공종별로 현실화되어야 한다.